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9. 19 선고 2022가단27256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원, 이국주

변 론 종 결 2023. 8. 8.

판 결 선 고 2023. 9.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9. 2.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2. 접수 제100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C에게 CPVC 파이프 등을 판매하면서 물품대금을 2019. 8. 31.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중 9,771,798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소46293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20. 12. 17. “C은 원고에게 9,771,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C의 배우자로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년2144호로 이혼 등 청구의 가사조정신청을 하여 2019. 8. 13. 조정기일에서 피고와 C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고(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건물 전체 중 C 명의 1/2지분에 관한 재산분할약정을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와 C은 이혼한다.
2. C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2019. 9. 15.까지 지급한다. 만약 C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9.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6. 피고와 C은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가.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인 D호가 포함된 서울 서대문구 E 지상 3층 다세대주택 전체를 의미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 13.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위 이전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록세는 피고가 부담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순번 6번(F호)에 대하여 C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과 이 사건 건물 중 순번 3번(G호)에 대하여 C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대한 각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다만 피고와 공동임대인인 C의 동생 H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1/2씩 부담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C이 체납한 세금을 모두 완납하여 이를 해지하도록 한다. 만약 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위 나.항에

서와 같이 부담하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임차인에게 이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한 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C에게 구상할 수 있다.

(후략)

다. 피고는 2019. 9. 2. 서울서부지방법원 접수 제100210호로 2019. 8. 13.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은 I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만한 경영 내지 매출 부분 중 상당 부분이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었고, 2019. 2. 19.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존재하며, C의 주식회사 J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도 191,730원 및 11,354,970원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존재하는 등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지분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럼에도 C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C이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었거나 무자력 상태가 심화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8호증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발생 경위(갑 제1, 3, 4, 5호증), C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자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갑 제2, 6 내지 8호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일 뿐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세아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와조 경사슬라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지층 87.48㎡

1층 87.48㎡

2층 87.48㎡

3층 74.52㎡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2층 호

연와조

40.8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 157.4㎡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157.4분의 21.57

갑구4번 지분 2분의 1

.끝.

